

지급보증번호 :

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

수 신 : ○○병(의)원장 귀하

제 목 :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급보증서

1. 귀 의료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귀 의료기관에 진료한 다음 교통사고환자는 우리 회사(조합)가 보상책임을 지고 있는 피해자로서 우리 회사(조합)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의거하여 귀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진료비를 지급할 것을 보증합니다.

- 다 음 -

환 자 성 명	(남,여)	생 년 월 일	
접 수 번 호		피보험차량번호	
사 고 일 자		담 보 종 목	
상 해 급 수		보 상 한 도	
지급보증기간 ^(주)	. . . ~ . . .		
보상 담당자		연 락 처	
특 이 사 항			

(주) 지급보증기간 :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」 별표 1 '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 금액'에 따른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의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하며, 그 기간은 아래와 같음

- 최초 지급보증기간 :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
- 최초 지급보증기간 경과 후 :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

20 년 월 일

○○보험주식회사 ○○센터장 (인)

주소 :